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시·도회를 순회하며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노무관련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교재로 사용된 ‘건설업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사고발생시 업무처리 요령

-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라.
현장관리자가 본사에 신속히 보고하라.
- 문서로 사고발생경위를 작성하라.(6하원칙)
 - 1) 재해자 진술서
 - 2) 목격자 진술서
- 경미한 사고도 관심을 가져라
자동차사고, 타박상, 허리삐끗, 부딪침, 용역직원
-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
 - ① 출력일보
 - ② 작업내용
 - ③ 작업강도
 - ④ 목격자, 팀장과 친분, 친인척 여부
 - ⑤ 과거 동일부위에 공상처리 여부
 - ⑥ 이전 작업장 파악
 - ⑦ 숙소생활여부(전날 음주, 당일음주, 숙소동료파악)
- 119 신고여부를 판단하라
- 병원이동시 동행하라.
- 최초 X-ray, CT, MRI자료를 반드시 확보
- 의무기록사본발급(최초 진료차트)
- 요양급여지급내역(건강보험공단) 발급
- 향후 치료기간 파악 및 비급여 예상금액 산정
- 최대한 관심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라
- 공상 재원마련 상해보험 가입
- 원도급사와의 비용분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 용역계약서 작성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라.
- 공상처리시 비용분담 문제를 계약서상에 명시
- 진단서를 꼼꼼히 확인하라.
진단서란 의사가 타인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문서로 일반적으로
 - ①상병명
 - ②확정까지 경과

③ 치료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진단서 보는 방법

■ 진단서 기재내용

- **상병명** : 상해부위와 상해정도를 진단서에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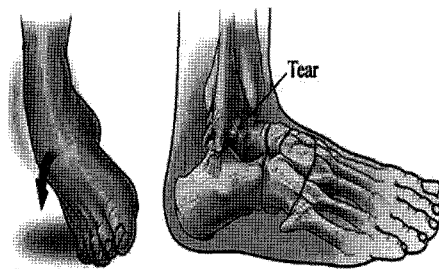
- **구성요소**

- ① 발병시기 및 경과 : 예) 급성 ~ , 만성 ~ , 지연성 ~ 등
- ② 신체 발병 부위 : 예) 두부 ~ , 상완 ~ , 복부 ~ 등
- ③ 해부학적 부위, 국소명
 골격계 : 상박골, 대퇴골 등
 근건계 : 상완이두근, 대퇴사두근 등
 인대계 : 후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 등
 혈관계 : 쇄골하동맥, 상완정맥 등
 내장계 : 심장, 간장 등
 신경계 : 액와신경, 좌골신경 등
- ④ 상 태 : 개방성, 폐쇄성, 완전, 불완전 등

⑤ 상해내용

- **창과 상** : 창이란 외부의 힘에 의하여 피부의 연속성이 끊어진 개방성 손상을 말하며, 상이란 피부의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은 폐쇄성 손상을 말함

- **찰과상** : 피부에 있는 털이 벗겨지고 굵히는 외상으로서 진물이 나는 정도이며 출혈은 생기지 않는다
- **좌상** : 둔력에 의하여 혈관이나 근육 등 연부조직 또는 내장기관이 압축 좌멸된 상태로 일명 『타박상(打撲傷)』이라고도 부르며 피부에는 상처를 주지 않고 피부 안쪽층에서 내출혈이 생겨 멍이 드는 외상으로 외부에 출혈을 보이지는 않는다.
- **좌창** : 예리하지 못한 물체(둔기)에 부딪히거나 맞았을 때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출혈을 동반하며 피부 안쪽층의 근육이나 뼈를 다치는 외상을 말하며



이때는 보통 상처가 난 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꿰매기(봉합)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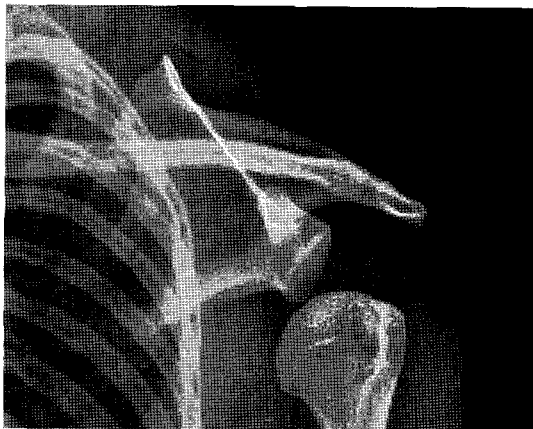
- **절창** : 예리한 칼날로 잘려서 생긴 창
- **자창** : 예리한 못이나 물체에 피부를 찢어서 출혈이 생기고 끊게 되기도 하는 외상을 말한다.
- **열창** : 피부를 포함한 근육, 인대 등이 찢어져서 꿰매야 하는 외상을 말한다.

- 타박, 염좌, 탈구, 골절

- **타박상** : 조직심부가 압착되어 생긴 손상
- **염좌** : 일정관절에 정상의 운동범위 이상의 힘이 작용하였을 때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인대나 관절낭이 잡아 늘어진 상태, 혹은 잘려진 상태를 말한다. 통증, 종창, 피하출혈, 운동제한 등이 있게 된다
- **탈구** : 관절이 어긋나서 뼈가 제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를 말한다. 즉 외력에 의하여 뼈의 머리부분이 관절포를 뚫고 밖으로 이탈한 상태이다. 탈구는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운동을 잘못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흔히 팔굽, 어깨, 다리의 뼈마디에서 잘 생긴다
 ※ **완전탈구** : 관절면이 완전히 접합하지 않은 상태
아탈구 : 관절구의 일부가 접합되어 있는 경우
- **골절** : 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명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되어 선상의 변형을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 진단용어

- ① 부종 : 피부조직 내에 수분이 다량으로 저장된 상태를 부종이라고 하며 그러한 것이 외부에서 보이는 상태를 말함
예) 뇌부종, 안면부종 등
- ② 출혈 : 혈액의 전 성분이 혈관강의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혈액이 조직, 체강 기관의 관강 또는 체외로 나오는 것을 말함
예)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안저출혈 등
- ③ 혈종 : 출혈한 혈액이 조직 내에 축적된 상태를 말함
예) 두부피하혈종, 경막하혈종, 슬관절내혈종(혈종) 등
- ④ 증후군 : 생체의 이상사태는 증후와 검사 결과의 이상치(비정상치)를 가지고 가늠하게 되는데 몇 가지의 증후 또는 각종 검사 결과의 상이 한가지로 짜여 동시에 출현하게 되어 그 것이 전체의 특유한 패턴을 나타내게 할 때, 그 조합을 증후군이라고 함
예) 구획증후군, 외상후성증후군
- ⑤ 발병시기 및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
 - 급성, 아급성 : 급성이란 급격하게 증상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아급성은 급성이라고 불릴 만큼 심한 것은 아니고 버금가는 비교적 평온한 경과를 나타낸다.
 - 만성 :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말



하며 특히 만성질환의 의미는 최초의 자각증상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면서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부지불식) 진행된 증상을 말한다.

예) 만성 간염 등

- 지발성 : 어느 상해를 과거에 수상하여 그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새로이 발현한 증후를 말함

예) 지발성 척골신경마비 등

- 진구성 : 병적 소견이 시간을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예) 진구성 전십자인대 단열, 진구성 요추압박골절 등

■ 진단서의 종류

-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상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 사람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 의사 자신이 진료중이던 사람이 진료한 사실이 있는지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발부하는 것으로 의료법제18조제1항에는 사망 전 48시간 이내에 진료한 사실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는 진찰을 하지 않아도 편의상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사체검안서 : 사망진단서와의 차이는 의사 자신이 진찰한 지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즉 사망진단서에 해당되는 사체 이외의 모든 죽음을 증명할 때 이용된다.
- 사망원인 : 사망원인, 즉 사인은 직접사인, 직접사인의 원인인 중간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의 원인인 선행사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직접사인 :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 중간선행사인 :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사인으로써 선행사인에 의해 야기된 사인
- 선행사인 : 직접사인을 야기시킨 최초의 사인
 - ※ 의료법령은 사체검안서 등에 사인을 기재

함에 있어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선행사인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 한편 진단명을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증상, 징후 또는 검사 결과와 같은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와 진단명 사이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진단의 근거 가운데 병인, 외연 또는 형태학적 개념에 의한 진단명은 ‘최종진단명’이며 증상이나 징후를 근거로 한 진단은 ‘임상적 진단명’이다. 즉 ‘최종진단명’은 증상과 징후 외에 여러 가지 검사의 결과(예컨대 미생물학적 검사, 생화학적 검사, 조직병리학적 검사, 방사선과 검사,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 심전

도, 뇌파 검사, 내시경 검사 등)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반하여 ‘임상적 진단명’은 임상적인 증상이나 징후만 가지고 의사가 재량에 의해 결정한 진단명으로 기능적 개념에 의한 진단명이다. ‘임상적 진단명’을 바탕으로 하여 형태학적 진단명-최종진단명-을 쓰고자 한다면 진단명 뒤에 (추정) 또는 (의증)이라고 덧붙인다.

- 사인불명 : 넓게는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